

2003년도 공장자동화 관세 감면 대상물품 (골판지포장관련)

조합 기획조정팀 제공

우리조합에서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로부터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조사하여 보고 하도록 요청받아 2003년도 국산대체 불가한 골판지포장설비에 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을 2002년 7월에 조사한 결과, 골판지제조기(지폭 1,800mm)를 포함한 총 10개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신청하여 지정 받았다.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서는 골판지포장제조 관련 2003년도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물품을 지정 고시(공장자동화관세감면 규칙개정 2002.12.26 보도자료-관세제도과)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1년동안 지정물품에 대해 관세율 8%(물품가액의) 중 50%를 감면하고 있는바, 골판지포장업계 관계자 여러분께들서는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귀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관세율 표번호	부호	품명	내용
33	8420 8477 8479	10 80 89	캘린더기(Calender) 또는 프레스	수치제어 ·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4. 제지용(신문용지를 제외한다)으로서 엠보싱기능 · 광택기능 또는 열압착기능이 있고, 로울러폭이 2천500밀리미터(mm) 이상이며, 최고속도가 분당 650미터(m/min) 이상인 것
44	8422 8479	40 89	결속기 또는 포장기(결속기 · 포장기 및 튜빙기를 포함한다)	수치제어 ·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2. 종이가공제품(기저귀 · 생리대 · 화장지 · 키친타월 및 미용지에 한한다) · 룰(Roll) 또는 시트(Sheet)상태의 종이제품을 투입 · 정렬 · 포장 · 실링(Sealing) 및 자동취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포장능력이 분당 50백(bag/min) 이상인 것 나. 종이상자 · 필름 또는 튜브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것으로서 처리능력이 분당 6케이스(case/min) 이상이거나 6번(bundle/min) 이상인 것 3. 룰(Roll) 또는 시트(Sheet)상태의 완성된 종이제품 처리용으로서 투입 · 정렬 · 포장 · 실링 또는 테이핑 및 자동취출 기능이 있고, 포장능력이 시간당 20룰(roll/h) 이상인 것, 분당14리ם(ream/min) 이상인 것 또는 분당 3팩(pack/min) 이상인 것
60	8424 8428 8439	90	절단기(Slitter를 포함한다)	수치제어 ·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연번	관세율 표번호	부호	품명	내용
	8441	10,80		2. 알루미늄박·알루미늄판·종이·필름·스테인리스 또는 판지를 절단 후 트리밍(Tri-mming) 또는 권취할 수 있는 것
	8444			
	8449			
	8456	10,99		8. 제작용으로서 최대재단폭이 43센티미터(cm) 이하인 것 또는 130센티미터(cm)를 초과하는 것
	8461			
	8462			
	8464	10,90		
	8465	91,99		
	8468	20,80		
	8475			
	8477	51,80		
	8479	20,81		
		89		
68	8439	20	초자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백상자제조용으로서 로울라폭이 2.5미터(m) 이상이고, 최고속도가 분당 600미터(m/min) 이상인 것
69	8439	20,30	골판지 제조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편면골판지제조용 또는 양면골판지제조용으로서 지폭이 1.8미터(m) 이상이고, 최고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m/min) 이상이며, 핑거리스(Fingerless)형에 한한다.
70	8439	30	오토스프라이저 (Auto Splicer)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서 지폭이 1.8미터(m) 이상이고, 최고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m/min) 이상인 것에 한한다.
73	8439	99	골판지웹(Web)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골판지제조설비로
	8441	80	조절장치	서 골판지웹의 장력과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78	8441	30	플렉소다이커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골판지상자제조용으로서 인쇄 및 토토리타입의 급지면적이 2천400밀리미터(mm) 1천600밀리미터(mm) 이상이고, 평판타입의 급지면적이 1천600밀리미터(mm) 1천100밀리미터(mm) 이상인 것으로서 인쇄기능이 있으며, 최대절단속도가 분당 100매 이상인 것에 한한다.
79	8441	30	플렉소홀더글루어 및 스티처(Flexo Folder Gluer & Stitcher)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골판지상자제조시 인쇄공정 및 봉합공정을 동시에 수행하고, 최대처리속도가 풀봉함일 경우에는 분당 200매 이상이며, 철박음의 경우에는 분당 1천회 이상인 것에 한한다.
80	8441	80	전분자동제어장치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골판지전분접착제제조용으로서 시간당 최대처리용량이 2천500리터(/h) 이상인 것에 한한다.